

宇宙 商業活動 規律에 있어서의 宇宙法の 發展的 位相

申 弘 均*

■—————》차 레《—————■

- | | |
|--|---|
| I. 序 說 | III. 宇宙法에 根據하지 않은 國內
法 및 國際 慣行에 依한 宇宙
商業活動 規律 |
| II. 宇宙 全人類 利益을 위한 利
用原則에 根據한 宇宙法の 宇
宙商業活動 規律 | IV. 結 論 |

I. 序 說

宇宙 開發은 그 惠澤이 人類 全體를 위해 使用된다는 原則과 함께 시작되었다. 宇宙 資源으로부터의 惠澤을 規律하려는 國際 秩序의 形成에 있어서 이 原則은 우주에서의 自由로운 探查 活動을 正當化하여 주면서, 宇宙에서의 領空 主權을 排除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바탕을 둔 국제 질서에서의 主體는 各 國家였으며, 이 國家들 間의 關係를 規律하는 것으로 宇宙法은 形成되어 왔다. 國家는 국제정치의 主體者로서 人類의 利益을 伸張시키고 그를 代辯한다는 것이 認定되었으며, 이에 宇宙法은 國家가 그 自國民의 宇宙 活動을 監督 및 統制할 權利를 保有함을 認定하였다. 따라서 우주법은 국제 公法으로서 우주 활동에 관한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規律하는 것이다. 그 권리는 우주 활동을 수행할 권리이며, 그 의무는 그 活動이 人類 全體의 利益을 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宇宙 活動의 商業化는 이와 같은 概念의 宇宙法에 또 다른 次元을 부

* 韓國通信衛星事業團 事業監理1室 衛星監理部長・法學博士, 韓國航空法學會 會員

여하고 있다. 우주 활동의 主體者로서 民間 기업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그 활동이 상업적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私人 對 私人의 관계 형성을 意味하며, 人類의 利益이 아닌 個人의 利益 追究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발전은 국가들의 인류 이익을 위한 宇宙 活動을 基礎로 하는 宇宙法에서 어떻게 收容될 것인가? 이는 바로 우주법이 우주 상업활동을 규율하면서 그 발전적 단계를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것이다.

本稿는 “宇宙의 全 人類 利益을 위한 利用” 原則이 우주 상업활동 體制의 형성에서 어떠한 樣式을 통해 준수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면서, 국제公法으로서의 우주법이 우주 상업활동의 규율을 통해서 어떠한 발전적 位相을 갖게 되는가를 분석하려고 한다.

II. 宇宙의 全 人類 利益을 위한 利用原則에 根據한 宇宙法の 宇宙 商業活動 規律

우주법의 우주 상업활동에의 通用 問題에 있어서의 먼저 우주 상업활동의 法的 概念이 規定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단순한 論理的 方式을 떠나서, 현재까지의 우주법 관계 諸조약이 “상업적”이라는 표현을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宇宙商業活動”의 개념 규정에서 문제점은, 또한 諸조약들 및 學說들이 “宇宙活動”의 概念 規定에 있어서 一致된 意見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點에도 연류된다. 즉 “空間主義”와 “機能主義”의 觀點 差異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우주 상업활동이 우주 활동의 한 分化된 形態로 보는 見解가 通念이며, 1967년 우주조약 제1조 2항에서 언급될 “宇宙의 利用”의 한 分野로 보는 견해가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주 상업활동도 1967년 우주조약에 의거 국가의 감독 및 統制를 받게 되며, 우주 활동으로서의 그 惠澤 分配에 따른 原則이 通用된다.

1. 宇宙 商業活動에 있어서의 國家의 役割 規定：國家 監督 및 責任主義 原則

1962년 INTELSAT 체제의 創設 이후, 美國의 政策에 의해 美國의 私 企業으로서의 COMSAT이 INTELSAT의 經營 管理 會社로 指定되려 할 때, 소련을 비롯하여 여러 東歐국가들 및 法學者들은 국가만이 우주 활동을 遂行할 수 있으며 모든 國際的 責任을 질 수 있는 主體라고 主張하였다. 이는 1967년 우주 조약에 反映되어 “非政府 組織體의 우주 활동은 국가에 의한 許可 및 監督하에서만 認定된다”는 條項이 채택되었다. 이와 함께 非정부 組織체들의 우주 활동에서 일어난 모든 손해에 對하여는 국가가 責任을 진다는 原則이 成立되었다.

이러한 原則은 우주 상업활동을 許可·規制하는 各國의 國內法에 反映되고 있다.

(1) 宇宙 商業活動에의 國家 監督主義

국가 當局에 의한 우주 상업활동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현재 국제법 상의 義務 遵守를 위한 것과, 둘째 그 기업들과 他國 政府들 間의 關係를 想定하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a) 國際法上의 義務 遵守를 保障하기 위한 國家關與

i) 美國의 例

1984年 7月 17日字 “자원탐사위성 채재 상업化法”과 같은 해 10月 30日의 “상업용발사에 관한 法”이 예로 들어질 수 있다.

前者의 경우, 그 101條는 民間 資源探查衛星의 運營者는 美國의 國家 安全을 保障하고, 그 국제의무를 遵守할 것을 義務로 규정하고 있으며, 美 商務省이 연방 정부당국으로서 民間 資源探查衛星 운영 企業에 對한 許可賦與權을 保有하고 關係 法令을 發射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商業用 發射에 관한 法”의 경우, 美 運輸省은 그와 같은 目的의 발사에 對해서 발사 허가를 부여할 권한을 保有하고 있다. 발사 許可 節次는 “발사될 위성체의 任務에 關한 承認”과 “公共 安全에의 爲害 여부에 對한 承認”으로 구성된다. 運輸省은 申請人이 提出한 資料에 근거하여 120日內에 그 許可 與否를 通報하여야 하며, 關係 法令 및 規定을 違反한

企業에 對해서 그 許可를 卽刻 取消시킬 수 있는 權限을 保有한다.

ii) ARIANESPACE의 경우

ARIANESPACE의 경우, 美國의 發射 用役 企業들과 區分되는 點은 우선, 그것이 유럽 各國間의 協約에 依해 創設되었다는 것이다. 1980年 1月 14日 佛 政府는 “ARIANE 발사體의 生産段階에 關한 宣言文”을 제 안하면서 他유럽국가들의 同意를 要求하였다. 이 宣言의 主內容은 “商業 用 衛星發射 市場의 需要를 充足시킨다”는 것이었으며 유럽 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 ESA)과 ARIANESPACE間에 체결된 協定書는 當 會社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사항들을 規定하고 있다. 이 協정서가 ARIANE 計劃에 參與한 유럽국가들이 지켜야 할 國際法上的 義務들을 明示하고 있다. 이 文書는 ARIANESPACE측에 의해 받아들여짐으로써 1981年 5月 15日 字로 發效되었고 當社는 各國이 要求한 義務를 遵守할 것을 宣言한 것이다.

이처럼 ARIANESPACE는 多國籍主株에 依한 多國的 企業이기도 하지만 佛 國內法の 適用을 받고 있다. 佛의 國立 宇宙研究所(Centre National d'Etudes Spatiales, CNES)는 當社의 資本金 1억 2천만 프랑스프랑 中에서 34.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佛 政府는 CNES의 이와 같은 참여 조건으로 CNES의 국가소유 持分이 50%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어, ARIANESPACE에 對한 佛 政府의 統制權을 公고히 하고 있다.

(b) 民間 企業들과 他國과의 關係를 監督하기 위한 政府 參與

우주 활동에 있어서의 국제 협력 原則은 1967년 宇宙 條約에서도 천 명되었으며, “宇宙의 全人類 利益을 위한 利用” 原則의 實現을 위한 것 인만큼 宇宙法의 根本의 原則으로 看做되고 있다. 우주 활동의 商業化가 意味하는 바는 첫째 국가間 協力 關係에 상업이익을 追究하는 民間 企業이 한 主體者로서 登場한다는 것과 둘째, 국가間 모든 국가 企業間의 協力關係를 떠난 소비자 和 生産자 또는 用役提供者의 關係가 成立된다는 것이다. 美國의 國內法들은 이러한 點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i) 國家 對 民間 企業의 協力關係에 對한 政府 關係

1984年의 “자원탐사위성체제 상업化에 관한 法은 연방 정부당국이 상

업화 이후에도 국제협력 문제를 부담할 것을 明示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자원탐사위성체제를 운영하는 기업이 國際協力까지 부담하는 이유로 해서, 그 수집된 情報의 판매 가격이 引上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美 政府의 政策이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美 政府가 開發途上國等을 비롯한 국가들에게 자원탐사위성이 수집한 情報를 국제 협력의 차원에서 저렴한 價格으로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情報를 판매하기 위한 市場의 創出을 가능하게 한다고 判斷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은 1984년의 상업화법에서도 잘 드러난다. 즉 상업화 以前부터 美國은 자원탐사위성에 관한 情報를 無差別 제공하여 왔으며 여러 국가들은 그 체제에 따라 地上受信局을 開設·운영하여 왔다. 同法 607조 b項은 상업위성체제의 운영자도 이와 같은 既存의 施設과 技術의 附合하는 체제를 운영할 것을 明示하고 “연방정부의 관계 當局이 자원탐사위성에 관한 자료, 기술 및 要員 養成을 위한 支援을 開途國에 提供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아울러 同法 501條는 자원탐사위성체제에 관한 研究 및 개발 費用을 연방 정부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i) 國家 對 民間企業의 賣買關係에 對한 政府 關與

1984年 자원탐사위성체제의 상업화 당시, 외교적 問題에 關聯되어 있는 義務에 民間 企業들의 參與가 너무 擴大되는 것은 現在의 外交의 樣式과 慣行에 어긋나는 것이다.¹⁾ 라는 意見이 美議會內에서 支配的이었다. 상업화 法은 이러한 點을 고려, 政府間 關係가 政府 對 民間 企業關係로 變遷하는 것이 漸進的으로 이루어지도록 도모하고 있다. 同法 201條는 현재 美정부와 여러 국가들間에 締結되어 있는 地上受信局 운영 協約이 滿了될 때까지, 美國 政府가 위성체제의 所有權을 保有하며, 그 協約들이 滿了된 후에야 민간 기업이 他國 정부와 協約 更新을 위해 협상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美 上院의 한 報告書는 이러한 조치의 利點으로서 첫째, 美 政府가 民間 企業들의 外國 정부와의 關係를 보다 密接히 감독할 수 있고, 둘째 外國 정부들이 美國의 民間 企業들과의 관

1) DalBello, Richard “U.S. law and Space Technology Land Remote Sensing” 국제우주법학회연감 1985, p. 28.

계에 익숙해질 수 있는 時間的 餘由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判斷하고 있다.

이와 같은 政府 당국에 의한 기업들의 우주 활동에 對한 감독은 정부 당국 自信이 우주 활동에 관련된 責任을 부담하는 것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2) 國家 責任主義 原則

1967年 宇宙 條約 제 6 조는 民間 企業을 包含한 自國籍人들에 의한 우주 활동에 對한 國際的 責任을 當 國家가 부담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여기서 “국제적 책임”의 概念은 한 국가에 귀속될 수 있는 不法行爲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法律關係를 包含하고 있다. 한편, “宇宙物體에 의하여 發生한 損害에 對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은 불법 행위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나 第 3 者에게 심각한 避害를 입히는 우주 활동에 對한 책임을 다루고 있다. 요컨대, 宇宙法에 있어서 국가의 국제 책임이 發動되는 경우는 이처럼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지는 바, 현재까지 提示되어 온 法理論과 국제연합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委員會(COPUOS)에서의 各國의 主張間에서 볼 수 있는 兩者間의 差異는 제 3 자 損害에 對한 責任의 경우와는 달리, 不法的 宇宙活動의 概念이 定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현 時點에서 不法的 宇宙活動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다루는 國內法은 아직 論議할 階梯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는 제 3 자 손해에 對한 책임의 경우만이 分析될 것이다.

(a) 제 3 자 손해에 對한 責任의 構成 要素

i) 責任의 主體

第 三 者에게 發生한 責任의 主體는 發射國으로 規定된다. 1972년 조약 제 1 조 c項은 발사국을, “宇宙物體의 발사를 行하거나 行하게 한 국가, 또는 그 領土 또는 施設物이 宇宙物體의 발사를 위해 쓰여진 국가”라고 規定하고 있다.

또한 1967년 우주조약 제 6 조에 따라 自國 企業의 우주 활동을 그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民間 企業이 發射를 行하는 경우 발생한 損害에 對해서 그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ii) 責任發生의 基準

1972년 協약은 책임 發生의 基準을 規定하고 있다. 먼저 地上에 있는 物體 또는 飛行中인 항공기에 對한 손해의 경우와, 地上 以外의 領域에서 宇宙物體 또는 그에 搭乘하고 있는 人員 또는 財產에 對해 他國의 우주 物體가 損害를 끼친 경우가 구분된다. 前者의 경우, 無條件 책임주 의가 適用되며, 被害者측은 發射國家에 依한 過失 또는 미기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後者의 경우에는 被害者는 加害 行爲가 加害 國家의 또는 그 人員의 過失에 依해 일어났음을 證明하여야 한다.

이처럼 국가에 의한 책임 배상원칙에 따라 우주상업활동을 行하는 기 업들에 對한 規制가 國內法에 의해 制度化되어 있다.

(b) 第三者 損害에 對한 責任에 關聯된 美 國內法

i) 商業用 資源探查衛星 體制의 경우

1984년 法은 美國 정부가 他 위성에 對한 損害를 배상하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다. 同法 402조는 그러한 의무 조항을 明示하면서, 被害를 입 힌 商業用 資源探查衛星 體制의 운영 기업이 그와 같은 피해 보상을 미 국 정부가 부담하더라도 정부측에 對해 보상할 의무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反面에, 상업용 자원탐사위성 체제를 운영하려는 許可 申請時, 그 企業은 宇宙에서 그 任務가 終了될, 그 기업 所有의 모든 不必要한 위성 들을 제거할 의사를 表明하는 것을 許可의 조건으로서 美國 정부는 제 시할 수 있다. 즉 壽命이 다한 위성 또는 고장을 일으킨 위성체 및 破片 이 일으킬 수 있는 事故를 막기 위해 企業이 手段을 강구해야 하는 것 이다.

ii) 商業用 發射 體制의 경우

發射體의 點火 및 發射時에 제 3 者에 對한 危害 可能性이 가장 크다 는 것이 一般論인 가운데, 상업용 발사서비스를 規律하는 美國內法은 발 사 許可 申請者가 제 3 者 보상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것을 義務化 하고 있으며, 美 상무성이 그 보험 액수를 定하는 權限을 부여받고 있 다. 또한 美 연방법규는 상업용 발사서비스業의 許可 條件으로서 申請 企業이 보험에 加入할 것을 義務化하고 美 運輸省이 保險 最低限度額을

定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 1988年 改正法에 따르면, 발사서비스 기업은 피해 보상 요구액으로 最高 5억U\$까지 부담하며, 피해 보상 要求額이 보험에 의해 담보된 액수를 超過할 경우에는, 연방 정부가 특별 支援 可能性을 모색하되, 15억U\$까지 支給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³⁾

2. 宇宙 商業活動에 依한 商品의 分配에 對한 規律：無差別 惠澤原則

宇宙法의 諸學說 및 1967年 宇宙條約 第1條에서 成文化 된 “宇宙의 全人類 利益을 爲한 利用” 原則은 모든 國家가 宇宙活動을 통한 惠澤을 누릴 수 있게 하는 體制의 成立을 통해 實現되었다. 구체적인 例로서 INTELSAT 위성통신체제와 LANDSAT 위성자원탐사체제가 指摘된다. 前者의 경우, 그것은 國際 通信의 公共서비스를 提供하였으며, 後者の 경우 探查된 資料 및 情報의 無差別 分配가 實現되고 있었다.

宇宙活動의 商業化의 意味는 그러한 宇宙 惠澤을 商品化한다는 것으로서 商行爲者는 영리를 目的으로 활동을 하되 모든 國家 또는 消費者에게 그 惠澤을 分配하여야 할 義務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宇宙法學者들은 물론 開途國을 비롯한 여러 國家들이 우주 상업활동을 宇宙法의 基本 原則에 違反되는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으며, 이에 對해 상업화된 分野의 宇宙活動體制는 그러한 “正當性” 論議를 어느 정도 收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 宇宙活動 惠澤의 商品化의 法的 意味

우주 개발을 통한 惠澤이 영리를 目的으로 하는 宇宙活動에 依해 商品化 될 때의 그 法的 意味는 理論上의 拷擦을 떠나서, 現在까지 維持되어 왔던 宇宙活動 體制의 存續을 그와 같은 영리 활동이 威脅한다는 點에서 찾아질 수 있다. 宇宙의 商業化가 本格化되기 以前에 이미 그 體制가 갖추어진 分野로서 衛星通信體制와 資源探查衛星體制가 例로 들어질 수 있다.

(a) 國際衛星通信體制의 경우

2) Commercial Space Launch Act Amendment PL 100-657.

3) Ibid.

국제위성통신 분야에 있어서 상업우주활동이라함은 既存의 INTEL-SAT 등의 국제기구가 아닌 民間企業들이 獨自의 衛星網을 使用하면서 국제 위성통신 市場에 進入함을 의미한다. Reagan 行政府의 主導下에 美國은 美國內 企業들이 特히 大西洋을 中心으로 하는 국제위성통신 市場에 供給者로서 登場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INTELSAT 機構와 국제위성통신서비스를 提供하겠다는 이 기업들간의 경쟁은 많은 論難을 불러 일으켰다.

i) 公共서비스 提供者로서의 INTELSAT

INTELSAT은 순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目標下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위성통신서비스의 제공 및 그 소유인 人工衛星網의 使用料가 그 收入源이 되지만, 다른 영리 목적의 조직과는 달리, INTELSAT은 그 收入의 極大化가 목표가 아닌, 全 世界 국가에 同質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INTELSAT 體制의 통신위성망 구축에서도 드러난다. 위성통신 서비스의 需要와 供給을 기준으로한 算定에 따라 통신 위성이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지극히 적은 地域에도 수요가 많은 地域에 설치되는 것과 同一한 수준의 위성이 설치된다. 예컨대, INTELSAT은 전 세계 약 1500 個의 地上送受信所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中 단 10%가 全體 收入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反面에 그 中 약 750個의 地上送受信所는 全體 收入의 단 10%만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同質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기에, 기술적으로도 그 作動수명기간이 充分하고, 경제적으로도 設備費 및 그 수익률에서 長期使用이 要求되는 위성들도 新型 위성으로 代替되어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通信서비스의 價格에 있어서, 통신량이 많은 地域의 價格이 그렇지 않는 地域의 同一 서비스에 對한 價格과 같아야 하기에, 통신량이 많은 地域에서 오는 수익이 통신량이 적은 地域에서 오는 赤字를 보충함으로써, 同一가격을 維持시키고 있다. 바로 이러한 理由 때문에, 통신량이 많은 地域에 통신서비스를 私企業이 提供할 경우 그 價格은 INTELSAT에 의한 서비스의 價格보다 더욱 저렴한 가격일 것이며, INTELSAT의 收入源을 위협할 수 있을 것

이다.

ii) INTELSAT의 存續性에 對한 危害 可能性

이와 같은 여건속에 私企業의 국제위성통신 市場 進出이 INTELSAT의 存立에 위협적이라는 主張이 대두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INTELSAT 通信網의 利用量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요 둘째, 私企業들은 通信量이 적은 地域에 通信衛星을 설치하지 않고 通信量이 많은 地域에만 投資함으로써 INTELSAT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大西洋 地域에 美國의 ISI와 ORION이 참여할 경우 INTELSAT 체제의 平均 使用料가 1987~1988年度의 경우 약 4.3%~4.9% 引上이 예상되며, ISI와 ORION 兩社의 設備가 완성되어 완전 稼動된다면, 平均 使用料가 31.7%~35.6% 引上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⁴⁾

이러한 理由로, 各國은 美國의 私企業들이 국제위성통신시장에 進出하는 것은 INTELSAT 體制의 存續을 威脅하는 것이며, “宇宙의 全 人類利益을 爲한 利用” 原則에 어긋나는 것으로 宇宙法上의 違反行爲라고 비난하여 왔다. 이와 같은 狀況은 자원탐사위성體制의 경우에도 보여지고 있다.

(b) 資源探查衛星體制의 경우

1986年 “資源探查衛星體制에 關한 UN 原則”에서도 簡明되었듯이 탐사 資料의 無差別 分配는 “宇宙의 全 人類利益을 爲한 利用” 原則의 遵守로 간주되고 있다. 그 商業化는 두가지 측면에서 이를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i) 情報의 獨占 可能性

자원탐사위성체제의 상업화는 탐사 자료에 對한 소유권이 法的으로 保障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 象論이다.⁵⁾ 이러한 측면에서 民間자원탐사위성체제 운영자에게 知的 所有權등이 인정되어, 그 탐사정보

4) Hinchman Report, p. 819, 美上院, 1983.

5) M.F. MURPHY, René OSTERLINCK “Protection des données et des interventions dans l'espace”, Dtoit de l'Esface, 1984, p. 289.

의 配分이 規律되어야 한다고 主張되고 있다.⁶⁾ 그 이유는 明白하다. 위성체제 운영자는 한 구입자에게 정보의 獨占權을 高價에 讓渡함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假定은 時差的 獨占權으로서 한 구입자에게 다른 구입자들보다 먼저 탐사정보를 제공하면서, 무차별 分배원칙에 어긋나지 않되, 공급자가 수익을 伸張시킨다는 것이다.

ii) 注文探查

주문 탐사는 자원탐사정보를 구입하려는 측이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위성체제 운영측에게 자신들의 目的에 맞게 위성의 通行路와 탐사方式을 주문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특별히 요구되는 地域만에 對한 탐사정보의 무차별 分배는 地域 全 地域에 對한 탐사정보의 무차별 分배와는 구별된다는 것이다.⁷⁾ 왜냐하면, 이럴 경우, 收益性이 높은 지역의 탐사 정보는 충족해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地域, 즉 주문량이 많지 않은 지역에 關한 탐사 정보는 び약해줄 수 있고 따라서 탐사 정보의 무차별 分배란 有名無實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주상업활동이 그 固有의 本質上 既存의 우주활동체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看過될 수 없는 것이다. “宇宙의 全 人類利益을 爲한 利用” 原則에 根據한 既存 體制가 이처럼 위협받을 수 있기에, 이는 宇宙法の 違反이라고까지 主張되고 있다.⁸⁾ 이러한 點에 對한 考慮가 우주 활동의 상업화에 關한 法律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2) 宇宙商業活動體制에서의 無差別 惠澤 原則 收容

우주상업활동이 ‘공공서비스’ 또는 국제협력의 次元에서 이루어지던 既存의 우주활동 체제에 미치는 惡影響을 줄이기 위한 장치는 앞서 설명된 바 있는 국제위성통신체제에서와 자원탐사위성체제에서 국제협약

6) J. LOGSDON, T. MONK “Remote Sensing from Space” Annal of Air and Spaw Law, McGill Urir, Vol, viii, p. 411.

7) Voute, Caesar, “Some consequences of the commercialization of satellite remote sensing”, Space Policy, Nor. 1987, p. 310.

8) 우주의 상업화에 대한 理念的 論難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 正當性 여부에 集中되고 있다.

및 국내입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a) 國際衛星通信 體制의 경우

INTELSAT으로 代表되는 이 분야에서는 國際機構로서의 INTELSAT이 그 조직을 구성하는 조약에 의거 自體 保護를 시도하고 있다. 즉 INTELSAT條約 제14조는 당 기구의 會員國이 INTELSAT체제 이외의 위성통신체제를 설립하는 경우 當 기구와의 協議 및 協助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그것이 국제公共通信 서비스를 위하여 INTELSAT의 위성망과 분리된 위성망을 구상할 경우, 그 體制는 INTELSAT체제와 기술적으로 附屬될 수 있고, 아울러 INTELSAT에 심각한 경제적 危害를 끼쳐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i) 제14조의 適用 與否 問題

이러한 제14조는 計劃되고 있는 통신서비스가 國際公共通信서비스인 경우에 적용된다고 規定된 가운데, INTELSAT조약 제 1 조 k項은 公共통신서비스를 “고정 또는 移動通信서비스로 衛星을 이용하기도 하며, 公衆에 의해서 電話, 電報, 텔렉스, 팩시밀리通信, 데이터通信 및 空中에의 放送用으로 INTELSAT 위성網과 送受信할 수 있는 地上局間의 TV 및 라디오 프로를 전송하는 것”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제14조의 適用에 있어서 또다른 문제점은 ‘深刻한 經濟的 危害’를 定義하는 것이다. 그것은 “상업체제가 운영됨으로서 야기되는 INTELSAT체제의 使用料 引上 및 加入國들의 투자비 분담금의 증가를 고려하는 것”⁹⁾이라고 解釋되고 있다.

ii) 제14조의 拘束性 問題

前述한 바와 같은 위성통신체제 설립을 위해 申請者가 INTELSAT측과의 ‘협약’을 開始하면 INTELSAT 執行理事會와 會員國總會가 참여하게 된다. 사무총장의 보고에 따라 집행이사회는 그 의견을 채택, 회원국

9) INTERSYSTEM COORINATION PROCEDURES : Proposed Procedures for implementation of Article xiv(d) Requirements concerning significant economic harm. Doc. INTELSAT. No B.G. 28-63, E' XX/6/77, JUNE 29, 1977, p. 2.

총회에 제출한다. 그 의견에 따라 총회는 그 '권고안'을 채택하게 되는데, 회원국 一標制의 이 표결에서 출석 및 투표국의 3分の 2 以上이면 肯定的인 권고안이 된다. 美 행정부가 미국內 기업들이 大西洋을 中心으로 한 국제위성통신市場 진출을 허가한 이후 이 '권고안'의 拘束力이 論議의 對象이 되고 있다. 理論的인 論議뿐만 아니라,¹⁰⁾ INTELSAT이 제공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그것이 제공하기가 非경제적인 통신서비스로서, 美國內와 近接 국가를 위한 서비스를 미국 및 近接 국가들이 設備하기를 決定한다면, 제14조가 요구하는 조건은 '信義의 原則'에 의해 充足될 것이라는 意見이 美 行政府內에 대두되고 있다.¹¹⁾

그러나 會員國들의 壓力속에서 美 行政府는 상업통신망이 長距離 전화서비스등의 公衆접속망에 참여하지 않고 大西洋國 국가들과의 통신서비스 開設時 INTELSAT 조약 14조의 遵守를 위해 그 국가들이 美國과 함께 협조할 것을 상업통신 설비측이 그 국가들에게 요구할 것을 승인 조건으로 하였다. 이는 "우주의 全 인류이익을 위한 이용" 원칙을 실현한 INTELSAT체제가 그 원칙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例인 것이다. 이는 또한 우주법 原則들이 우주상업활동체제를 規律하는데에 受容되고 있는 例이다. 이러한 傾向은 자원탐사위성체제에서도 發見된다.

(b) 資源探查衛星體制의 경우

1984年 미국의 자원탐사위성체제의 상업화 法은 상업위성체제의 운영자가 탐사자료를 無差別 分배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明確히 規定하고 있

10) "제14조의 趣旨는 INTELSAT체제가 실질적으로 여건의 변화에 잘 적응하기 위한 것이면서, 회원국의 一方的이고 非合理的인 정책 변화로부터 INTELSAT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권고안'은 그 의미 이상의 것이 아니다" Simone Courteix, "Systèmes Séparés" Droit de l'Espace, p. 292.

"INTELSAT이 채택하는 결정은 그 本質上 非強制的인 것이다" Rodriguez, Raul R.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and Satellite System ; INTELSAT & Separate System Cold War revisited", International Business Lawyer July/Aug. 1987, p. 322.

11) 美 안보, 과학 및 기술문제담당 국무차관보, James BUCKLERY의 F.C.C. 의장 Mark FOWLER의 서한, 1981, 7, 23. 88 F.C.C. 2rd ar 287-289.

다. 그러한 의무를 遵守하는 조건으로, 美 행정부 즉 商務省이 上業용 民間기업체제의 운영을 허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無差別 分配” 原則에 對해 同法 第104조 3(A)는 규정하기를 “특별한 이유, (즉 國家安保)를 除外하고, 型式, 價格 또는 技術的 측면에서 어떠한 特定 구입자에게 도 特惠를 주지 않는 것”이라고 明示하고 있다.

한편 同法은 上業용 자원탐사위성體制의 운영기업의 이익도 고려하고 있다. 該 第601조는 자료에 對한 該 체제운영자의 權利를 인정하되 該 자료 구입자의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第603조는 該 나라들이 購入者에 의해 복사되지 않고 他人에게 讓渡되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 著作權法의 경우와 이러한 보호장치가 다른 點은 該 第603조는 탐사자료의 판매자와 구입자간의 계약관계에만 適用된다는 것이다.¹²⁾ 이처럼 자원탐사자료에 對해 著作權法上的 保護를 안하는 이유는 該 자료의 처리 산업(value added industry)의 育成을 위한 것으로 看做되고 있다.¹³⁾

이와 같이 宇宙商業活動의 規律에 있어서 “宇宙의 全 人類利益을 위한 利用” 原則이 遵守되고 있다 이는 國家 以外の 主體者로서 民間 企業이 宇宙活動을 遂行함에도 이러한 既存의 宇宙法 體制內에서 該 活動이 규율됨을 證明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주상업활동의 多分化 및 複雜化는 또 다른 法源에 근거한 규율을 要求하고 있다.

Ⅲ. 宇宙法에 根據하지 않은 國內法 및 國際慣行에 依한 宇宙商業活動 規律

本章에서 다루어질 問題는 宇宙상업활동이 宇宙法 固有의 原則들에 根據하지 않은 國內法 또는 國際慣行들에 의해 규율되는 경우이다. 우주

12) MURPHY & Osterlinck, op. cit. 5, p. 288.

13) René osterlinck “legal protection of remote sensing data”, 국제우주법학 회연감, 1984, p. 118.

상업활동이 더욱 多分化되고 複雜化하고 있는 가운데, 宇宙法の 規範이 아직 形成中인 分野가 이러한 觀點에서의 法的인 分析을 要求하고 있다. 이 경우 國際的인 慣行들이 宇宙法の 未備點을 메꾸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反面에 主權 國家로서 自國의 安全과 公共秩序를 維持할 權利를 守護하기 위한 국내법들이 適用되는 것으로서, 宇宙法の 原則들과 相衝되는 경우도 發生하게 된다.

1. 宇宙商業活動에 關聯된 補償問題에 있어서의 國際 慣行

宇宙商業活動은 그 商品의 生産・提供 및 그 販賣에 있어서 國家間 또는 國家 對 個人 및 個人間의 法的 契約 關係의 成立을 前提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계약 관계는 그 책임 및 보상 문제의 發生時, 國家責任主義를 原則로 하는 宇宙法の 領域을 벗어난 法律關係에 따른 問題를 보여주고 있다.

(1) 宇宙法에 根據한 規範의 未備點

1972년의 “宇宙物體에 의하여 發生한 損害에 對한 國際責任에 關한 協約” 제12조는 보상 對象이 될 수 잇는 損害를 規定하면서, 보상은 國際法과 正義 및 衡平의 原則에 근거하여 그와 같은 損害가 일어나지 않았던 狀態를 回復시키는 水準이라고 明示하고 있다. 이는 精神的인 손해 또는 副產的인 經濟的인 損害까지도 無制限的으로 보상될 수 있다는 것으로 解釋되기도 한다.¹⁴⁾ 그러나 同 協約은 희생자에 對한 보상을 主眼點으로 作成되지 않았으며 이 協約대로라면 희생자가 充分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指摘되고 있다.¹⁵⁾ 요컨대, 問題는 被害者의 充分한 補償에 있어서 이 協約에 근거한 宇宙法보다는 다른 國內法이 더욱 決

14) Carl & CHRISTOL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space objects” 24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80, p. 346.

15) G.C.M. Reijnen “Outer space law and private enterprise in outer space :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2, Housto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65, 1979.

定的인 役割을 할 것이라는 見解다.¹⁶⁾

이러한 見解는 被害者가 損害 보상의 請求과정時 1972년 協약에 따르면 外交的 經路를 밟아야만 되는 것이기에 政治的 狀況의 影響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¹⁷⁾ 또한 그와 같은 청구가 좌절되고 1972년 協약 제14 조에 따라 청구위원회가 설치되어도 그 결정의 拘束力은 의문視된다는 것이다.

두번째 이유는 그 內容上으로도 1972년 協약은 피해자가 다른 經路를 通해 보상받을 권리를 制御하지 못한다는 것이다.¹⁸⁾ 이는 우선 同 協約이 발사국가의 自國民에 加한 損害에 對한 책임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이 경우 피해자가 위성체 또는 발사체의 製作會社를 相對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權利가 排除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甲國에서 製作된 宇宙物體가 乙國에 의해 發射되고, 그 宇宙物體가 丙國 國民에게 損害를 끼친 경우 丙國 國民이 甲國의 우주물체 제작회사를 相對로 보상을 要求하는 것에 對해 1972년 協約은 다루지 않고 있다. 또한 丙國 國民이 乙國에 對해 손해보상을 청구하고 이에 乙國은 甲國의 제작회사에 對해 그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對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假定的 狀況이 제시되면서, 自國의 企業이 제작한 宇宙物體가 일으키는 손해를 고려, 各國은 不良 宇宙物體를 제작하는 기업들이 自國 政府에 對해 無條件 責任을 부담하는 國內立法을 채택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¹⁹⁾

이처럼 宇宙商業活動의 發達は 宇宙法의 限界點을 메꾸어줄 수 있는 國內・國際法의 形成을 要求하고 있다. 問題는 그 경우, 그것들이 現行 宇宙法에 依한 規範과 附合하는가이다.

16) Randal r. Craft Jr. "U.S. Product liability law and commercial space aetirti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1986, p. 270.

17) Stephen C. Kenney "The impact of U.S. product liability law on commercial activities in space", I.B.A. 1986, p. 236.

18) Ibid, p. 271.

19) K.H. Bockstiegel "Present and future regulation of space aetivities by private industry", symposiun on space aetivities and Implication", 1980, Montreal.

(2) 現慣行 및 그 法的 意味

우주상업활동 분야 中에서, 우주 활동 自體가 안고 있는 危險度와 그에 따른 보상·책임 문제를 現實的으로 보여주는 분야는 발사서비스 분야이다. 原則的으로 宇宙法 및 一般 國際法에 근거한 의무사항을 除外하고는, 契約 當事者들은 그 意思에 따라 契約의 內容을 定할 수 있다.²⁰⁾ 現在까지의 慣行上으로는 발사서비스 提供者는 發射의 成功을 保障해주지 않으며, 結果에 對한 義務가 아닌 手段에 對한 義務만을 부담하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無過失主義인 것이다.

(a) 無過失·無責任主義의 內容

미국의 경우 無過失主義는 미항공우주국(NASA)의 발사서비스 契約 政策에서 由來된다. NASA의 발사체에 의한 서비스를 계약한 측은 발사체가 招來할 수 있는 제 3者 손해에 對한 保險에 加入하여야 한다. 이는 宇宙 往復船에 依한 발사서비스上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²¹⁾ ARIANESPACE의 경우에는 발사서비스의 申請者가 제 3자 손해에 對한 4억프랑스프랑의 보험에 가입할 것이 要求되고 있다.²²⁾ 따라서 발사서비스 提供者측은 제 3자 손해에 대한 보상문제에서 보호된다고 할 수 있다.

제 3者에의 被害가 발생하지 않고 衛星體 또는 發射體의 故障, 機能不良 또는 폭발로 위성의 所有측 및 발사서비스 被提供者가 손해를 입을 경우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 그 손해에 대해 계약자측이 미국 정부 또는 발사서비스 提供者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契約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는 ARIANESPACE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발사서비스에 있어서 發射體의 問題가 아닌 衛星體 自體의 問題 發生의 경우에도 위성체의 제작사측은 위성체의 發注者, 즉 所有者가 그에 對한 責任을 要求하지 않을 것을 契約조건으로 하고 있다.

20) Jean CHAPEZ, "Les systèmes de transport", droit de l'Espace, 1989, p. 120.

21) NASA Authorization Act, 1980 P.L., N 96-j48, 935 star 348 1979.

22) J. CHAPEZ, op. cit. 20, p. 122.

(b) 無過失・無責任主義의 法的 地位

이와 같은 無過失・無責任主義가 앞으로의 우주상업활동에서 하나의 慣習法으로서 인정될 것인가에 對한 斷言은 時機尙早일 것이다. 이러한 契約 樣式에 內在한 問題點은 서비스 또는 物品의 구입자가 明白히 不利한 位置에 處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적되고 있는 것은 이 樣式이 如他 商務關係에서 適用되어 온 규칙 또는 국제 協약에 근거한 것도 아니며, 수요 및 공급을 算定하는 市場經濟法則에 근거한 것도 아니라는 點이다.²³⁾ 이는 또한 美 政府 및 NASA가 衛星體 또는 發射體의 購入者로서, 우주 산업의 발달을 추진시키기 위해 채택하였던 美 政府 정책의 遺産이라고 지적되기도 한다.²⁴⁾

反面에, 이러한 無過失・無責任主義 채택의 不可避性으로 現 기술수준上 正確히 어느 物品의 不良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였는가가 究明될 수 없다는 點이 主張되고 있다.

이러한 技術的 次元에서 立證되는 無過失主義의 不可避性은 宇宙法이 國際公法으로서의 規律에서 이제 國際 私法 또는 商法으로 發展되어야 한다는 當爲性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만을 宇宙活動의 主體者로 認定하려했던 소련 및 東歐圈 學者들은 國際 宇宙私法의 形成에도 反對하는 立場을 堅持하여 온 것도 事實이다. 그 理由는 바로 국제 우주私法이 宇宙法의 基本 原則인 “全 人類 利益을 爲한 利用” 原則을 脫皮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국제 宇宙私法의 形成은 또한 우주활동에 관련된 國內法이 國際法的 效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意味하기도 한다. 實際적으로 美國의 國內法은 그러한 樣相을 보여준다.

23) Larry Kaplan, “Allocation of risk based on fault” is it feasible for satellite loss”, p. 161. I.B.A. 1986.

24) Ibid, p. 159.

2. 宇宙商業活動을 規律하는 國內法の 國際法的 效果

國家가 自國內의 企業의 宇宙活動에 對해 監督 및 統制權을 行使한다는 것은, 人類 全體의 利益을 爲한 것으로 간주되어 있는 宇宙 資源의 開發 및 分配 過程에 國家가 介入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에 宇宙法上의 原則에 근거하지 않은 國益의 伸張을 爲한 國內法이 宇宙商業活動을 規律하면서 그러한 活動을 遂行하는 企業들에 對한 法관할권 設定 및 그들의 商品 판매 양식이 形成되고 있다.

(1) 宇宙商業活動 規律에 있어서의 法관할권 設定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法관할권의 특징은 그 對象 空間이 無主權 領域이라는 點이다. 그러한 理由에서 領土의 概念의 法관할권이 아니라, 宇宙物體에 근거한 법관할권 설정 원칙이 確立되었다. 우주 상업활동을 규율하는 국내법들도 이에 基礎하고 있다.

(a) 宇宙法에 따른 法管轄權

1967년 우주조약 제 8 조에 따라 各國은 그 國적하에 登錄된 宇宙物體 및 그 搭乘 人員에 對해 法管轄權 및 統制權을 行할 수 있다. 宇宙物體를 國家의 國籍하에 登錄하는 의무는 民間 企業들 所有의 商業用 宇宙物體에도 適用된다. 등록의 법적 效果는 국가가 국제법상 뿐만 아니라 그 自國內法內에 그 등록을 인정한다는 것이다.²⁵⁾ 이는 또한 국가가 그 物體에 國적을 賦與한다는 것이며, 그 物體가 일으키는 損害에 對해 國家가 責任을 부담함을 의미한다.

1974년의 “우주 물체의 登錄에 관한 協約” 제 2 조에 의하면 등록국가 는 發射 國家로 規定된다. 同 協約 제 2 조 2項은 발사국가가 複數일 경우, 그 국가들간의 協의에 의해 등록국가를 결정한다. 발사국가는 “發射를 行하거나 行하게 한 국가 또는 그 領土 및 施設이 宇宙物體의 발사에 使用된 국가”로 規定된다. 따라서 발사 국가가 複數일 경우에 발사국가는 반드시 발사등록국가를 의미하지 않으며, 自國의 國籍이 아닌 宇宙物體를 自國의 領土內에서 發射하는 경우가 고려될 수 있다. 이때 1972년

25) Csabafi, “The concept of state jurisdiction in international space law”, p. 11.

의 제 3 자 損害에 관한 협약 제 5 조 1項에 따라 이 경우의 국가도 발사 국가로서 他國籍의 우주물체 발사에 관련된 責任을 부담하게 되며 그 감독권을 부여받게 된다.²⁶⁾ 이때 발사국가와 우주물체의 등록국가간의 協議가 想定될 수 있다.

그러나 우주상업활동은 발사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地上의 소비자에 對한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點도 注目된다. 이는 ‘발사국가’ 및 ‘우주물체의 등록국가’의 概念등이 宇宙法에 固有한 概念을 넘어선 活動으로 보인다. 이때 1967년 우주조약 제 6 조에 引用된 “適法한 國家”의 概念이 受容될 수 있다. 이 조항은 非政府組織體의 活動에 對한 국가의 管轄權을 規定하고 있다. 문제는 이 ‘적법한 국가’의 定義이다. 이에 는 여러가지 假說이 있을 수 있다. 첫째, 그 기업의 國籍 國家이다. 이러한 點에서 “발사가 美國 領土밖에서 行해져도 NASA는 美國 企業들에 對해 法管轄權을 行使할 수 있다”라고 主張되기도 한다.²⁷⁾ 以外에도 적법한 국가는 앞서 설명된 ‘우주물체의 발사국가’ 또는 ‘등록국가’일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적법한 국가’는 우주상업활동 企業의 國籍 국가, 또는 발사 국가, 또는 우주물체의 등록국가 등의 개념을 包括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예컨대, 한 국가가 그 기업의 國력을 근거로 그 管轄權을 行使하는 경우, 이 問題는 後者の 두 국가 概念을 內容으로 하는 宇宙法을 넘어선 일반 국제법 理論에 受容되어야 할 것이다. 美國의 宇宙活動商業化에 關聯된 法律들은 그러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b) 美國內法에서의 法管轄權 設定

상업용발사서비스의 경우, 法管轄權 行使의 基準은 ‘領土’에 두어져 있다. 즉 발사가 어떠한 主體에 의해서 行해지든지, 美國 領土內인 경우, 그것은 美 정부의 승인을 要한다. 두번째 기준은 ‘국적’이다. 1984년의

26) Reijnen, G.C.M. “future legal rules in respect to private enterpinse in outer space”, 국제우주법학회연람, 1982, p. 63.

27) Peter D. NESGOS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 applicable to commercial launch vehicle transpertation,” 국제우주법학회 연람, 1984, p. 101.

法 제 4 조 A항 및 B항에서 규정된 美國 市民은 美國 領土 밖, 他國 領土, 또는 空海上 및 國際 領空에서 발사를 行할 경우 美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活動이 단순한 發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탐사위성이 收集한 자료 및 情報의 판매활동으로 이어지는 商業用 資源探査衛星體制의 경우는 論難의 對象이 되고 있다. 1984年 “상업용 자원탐사위성체제에 관한 法” 제402條 a項은 “美國의 法管轄權 또는 統制下에 있는 그 누구도 제401조에 규정된 승인 없이는 어떠한 形式이던지 民間 자원탐사위성체제를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宇宙局(ESA)을 비롯한 各國의 批難의 대상이 된 부분은 이에 따른 聯邦규칙의 立法과정에서였다. 그 焦点은 美國 政府의 이름으로 등록된 발사체 및 위성체에 관련되어 있는 非미국기업에 對해서 미국이 管轄權을 主張하는 것은 不當하다는 것이었다.²⁸⁾ 이에 미국측은 法管轄權은 위성체제 自體보다는 그 體制의 운영자에 結付된다고 主張하면서 위성의 운영 및 情報 受信 업무의 위치가 법관할권 설정에 重要的 要素라고 主張하였다. 아울러 미국의 領土 내에서 情報를 受信하거나 處理하는 等の 地上 活動도 同等히 重要하다고 主張되었다. 요컨대, 美 연방규칙은 탐사자료 및 情報의 판매활동을 重視하는 態度를 堅持하면서 “美國의 發射體의 도움으로 機能하는 자원탐사위성체제 또는 그 中央統制局이 美國內에 없더라도, 美國內의 施設物(들)을 利用하여 資料의 收集·處理 및 分配 活動을 하는 企業은 美國의 法管轄權 또는 統制權下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論理에 따라, 美國籍 母會社의 支社로서 海外에서 자료판매활동을 하는 美國 기업은, 美國內에서 자료판매활동을 하는 外國籍 母會社의 支社와 區別되지 않는 것이다. 이로써, 자원탐사에 관한 美 국내법이 非미국기업에도 또한 外國 駐在 美기업에도 適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美國內法の 國際法的 效果는 宇宙商品의 去來에서도 發見된다.

(2) 宇宙開發惠澤의 分配를 統制하는 國內法の 國際法的 效果

28) A. Vahrenwald “Legal protection of the polar platforms users” proceedings of E.S.A. workshope, Italy 1986, 9. 4~5. p. 30.

우주상업활동의 主唱者들은 宇宙상업활동만이 開途國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이 宇宙開發 惠澤을 保有할 수 있도록 해주는 最善의 方法이라고 主張하여 왔다. 이는 모든 國家들이 法的으로 同等한 權利를 가지고 宇宙開發이 가져다준 商品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우주상업활동의 主體者, 즉 民間企業들이 自國의 國內法에 의해 規律하면서 他國家들에게 認定되는 權利는 그 同質性을 잃게 된다. 즉 國益을 이유로, 한 국가는 他국가에게 우주개발의 혜택을 판매하기를 拒否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例를 美國의 두 商業化法이 보여주고 있다.

(a) 商業用發射서비스 分野에 있어서

1984年의 商業용 발사서비스에 관한 法은 美國 領土內에서 또는 美國 市民에 의해서 美國 領土 外에서 이루어지는 발사서비스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승인은 安全問題에 관한 허가 및 위성體의 任務에 관한 허가로 구성된다. 1984年 法에 관한 美의회 보고서는 이러한 승인 節次 以外에 既存의 연방法 및 규칙들이 商業용 발사에 適用될 수 있다는 것을 排除하지 않고 있다.²⁹⁾ 發射體 및 衛星體가 美國의 輸出統制法에서 戰略 物資로 規定되어 있기에 輸出品目 制限에 관한 美 國內법이 適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84年 改正 “國際武器去來에 關한 法”(ITAR)은 衛星體를 宇宙의 軌道에 進入시키는 것은 輸出行爲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³⁰⁾ 따라서 美國 領土內에서 美國 발사체가 宇宙로 發射되는 것은 수출행위가 아니며, 戰略物資 輸出制限에 關한 法이 適用되지 않는 것이다 反面에 위성체 또는 발사체가 美國 領土外에서 발사될 경우 이는 輸出의 범주에 속하며, 전략물자 수출제한에 關한 法이 適用된다.³¹⁾

1984年의 法도 이와 같은 既存法들의 趣志를 그대로 담고 있다. 그 제 2 조 6항 및 7항은 商業용 발사가 美國의 安保 및 그 對外 정책에 結付된 美國의 國益과 附合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明示하고 있다. 衛星體의 任務에 關한 許可 節次는 그와 같은 國益의 次元에서 고려되며, 허가 伸

29) 美上院 Serake Report N° 656 28th congress, 2nd Sessin.

30) F.R. Vol 47, N° 236, 1984. 12. 6-47685- 미국무성.

請者는 위성체의 航行 船路 및 그 임무등의 情報를 상업용 宇宙運送事務局(Office of Space Transportation)에 提出하여야 한다.

예컨대, 미국의 국익과 부합되지 않는 發射서비스는 미국의 발사서비스 기업들에 의해 拒否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宇宙 軌道로의 進入手段이 美 국내법에 의해 統制되는 狀況은 宇宙 軌道로부터 收集된 情報의 提供에서도 나타난다.

(b) 商業用 衛星資源探查 情報의 分配에 對한 美國內法 .

“1986년의 위성자원탐사 體制에 對한 UN 原則”은 모든 國家가 탐사 자료를 利用할 권리가 있음을 規定하고 있다. 지구上 모든 地域의 탐사 정보를 모든 국가에게 제공한다는 名分으로 偵察 또는 탐사위성의 활동을 正當化하였던 이른바 미국의 “OPEN SKY” 政策이 反映되고 있는 것이다. 즉 UN 原則은 情報의 無差別 供給 뿐만이 아니라 情報의 無差別 收集도 認定하고 있다.

그러나 1984년의 “상업용 위성자원탐사 체제에 관한 法”은 情報의 無差別 공급을 制限하고 있다. 同法 제203條는 國家 安保에 관련된 其他 국내법의 適用性を 明示하고 있으며, 연방규칙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軍事施設物의 撮影에 關한 18USC.795 및 796이 適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同法에 따르면 美 大統領은 軍施設 및 軍事物資에 關한 情報의 分配를 禁止시킬 수 있다. 同法 796조는 항공 촬영도 制限되는 情報 수집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美 관계 당국은 이 조항이 상업용 자원탐사 위성의 경우 別途의 考慮를 要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趣志는 變함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되는 가운데, 情報의 수집 및 分配에 對한 美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排除되지 않고 있다.³¹⁾ 例를 들어서, 여기서 假定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상업용 자원탐사위성이 수집한 他 國家에 關한 情報는 無差別 分配 原則에 의해 모든 國家가 利用할 수 있으나 美國에 對해 수집된 情報는 美國 政府가 그 管轄權을 바탕으로 統制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自國 管轄權下의 民間 企業들에 對한 감독 및 통제權이 行使됨으로써, 全 人類, 全 國家를 위한다는 우주개발惠澤의 分配가 一國의

國益에 비추어서 統制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통제는 海外的 美國 기업 또는 외국 기업에 대한 法管轄權 行使이기에 領域外的 效果를 가져오는 것이며, 아울러 全 국가를 위한 資源의 惠澤이 한 국가의 統制에 의하기 때문에 領域外的・국제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IV. 結 論

宇宙 活動의 主體者로서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規定하는 것이 公法으로서의 宇宙法이었다면, 국가들이 그 自國民에게 우주활동의 遂行權을 인정하고 그를 統制하는 권리도 아울러 認定되고 있었다. 따라서 우주법은 국제 公法으로서 출발하였었지만, 國際 私法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우주 상업활동의 발달은 法的 關係의 多樣化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우주법 以外の 다른 法秩序・法體系에 의해 규율되는 領域이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주법이 국제법의 한 分野로서 獨自性を 保有하는 法體系인 根據는 그것이 우주를 全 人類를 위해 이용한다는 원칙에 立脚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주 상업활동이 그러한 원칙을 違反하고 있는 것인가는 아직 論議의 對象이 되고 있지만, 그러한 原則에 근거하지 않은 法體系에 의한 규율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點에서 우주법의 獨自的 영역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우주의 商業化가 論難의 對象이 되고 國際宇宙私法의 形成 以前에 국제우주기구 創設에 의한 국제우주 公法の 發展이 主張되었던 것이다. 이제 우주법은 그 獨自性を 유지하면서 全 국가의 이익을 위한 法體系 形成을 위해 發展 段階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ary 《

Developments in Space Law in regulating commercial space activities

Shin Hong Kyun

This paper examines current developing status of space law as defined in terms of its unique principle that “the utilization of outer space for all mankind’s interest”. As commercialization of space activities has brought about heated debate on its legitimacy with respect to that principle, space law has come to witness a dual situation. One is the realization of that principle in establishing commercial space activities system where all mankind’s interest is respected through the non-discriminatory distribution mode of space benefit. In satellite telecommunication system, the INTELSAT Organization assures its public service policy while protecting itself against a competition from separate systems. For remote sensing, commercialization of LANDSAT Systems promoted since 1984 seems not to affect present non-discriminatory distribution of data and information obtained.

On the other hand, active participation of private entity aiming at commercial profit enables national government to manage more effective control and supervision of those activities with a view to promoting national interests. Also, newly developed private rules and regulations are emerging in business relations about commercial space activities.

Extended capacity of national government assuring its national interest i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international resources that is outer space, and regulation of space activities by newly developed rules and cus-

toms provoke a concern about a identity problem of space law.

The best way to summarize this perspective might consist in saying that non space law regulations, which are not assumed as aiming at the promotion of all mankind's interest, are confirming their role about space related activities. For those reasons, we are now facing a developing status of space law as developments of commercial space activities continues.